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관하여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장기간 전담하도록 하는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고자 이와 관련이 있는 법관 사무분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그 밖에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해당 분야의 재판에 관한 사무분담이 변경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4항제3호 신설, 안 제4조제5항)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 그 밖에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안 제6조제2항)

3.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 해당 기간(이 호는 제1·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5항 중 “재판장인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제4항 제1호의 기간 안에”는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전담법관”을 “전담법관 및 전문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은 그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2. (생략) 〈신설〉 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장인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제4항 제1호의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 해당 기간(이 호는 제1·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 ----- -----, ----- -----.
제5조의2(전담법관의 사무분담) (생략) 〈신설〉	제5조의2(전담법관 및 전문법관의 사무분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은 그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에 배치함

제6조(사무분담의 변경) ① (생략)	<u>을 원칙으로 한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 <u>제4항</u>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분담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5항</u>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245